

## 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 : 「늘~하나 급여통장」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12월 26일
3.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상품명 변경, 상품명 선택 추가, 가입대상 확대,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 신설 등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b>『<u>늘~하나 급여통장</u>』 특약</b>	<b>『<u>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</u>』 특약</b>	
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“<u>늘~하나 급여통장</u>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	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“<u>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</u>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과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	상품명 변경
<p>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생략)</p>	<p>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좌동)</p>	
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으로</u>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</p>	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</u>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</p>	가입대상자 확대
<p><b><u>제 4 조 (신설)</u></b></p>	<p><b><u>제 4 조 상품명</u></b>  <u>이 예금의 상품명은 “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” 또는 “119생명지킴이 통장Ⅱ”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“119생명지킴이 통장Ⅱ”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합니다.</u></p>	조 신설
<p><b><u>제 4 조 이자지급</u></b>  ① (생략)  ② 제1항의 예금이자 는 ~ 영업점에 게시하는 <u>이율</u>로 계산합니다.</p>	<p><b><u>제 5 조 이자지급</u></b>  ① (좌동)  ② 제1항의 예금이자 는 ~ 영업점에 게시하는 <u>금리</u>로 계산합니다.</p>	조 체하
<p><b><u>제 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u></b>  ①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월별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요건</p>	<p><b><u>제 6조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</u></b>  ① 은행은 아래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월</p>	조 체하 및 조명 변경

<p><u>충족 시 해당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거래 시 횡수제한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u></p>	<p><u>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,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를 총합 월5회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만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.</u></p>	<p>문구 변경</p>
<p>(필수요건)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<u>50만원 이상 급여 이체(주) 시</u></p>	<p>(필수요건)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<u>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(주<sup>1</sup>) 시</u></p>	<p>문구 변경</p>
<p><u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<u>거래</u></li> <li>2.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<u>거래</u></li> <li>3. 인터넷뱅킹, 폰뱅킹(ARS)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<u>거래</u></li> <li>4.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<u>자동이체</u></li> <li>5. 통장 <u>재발행</u></li> </ol>	<p><u>(수수료 우대서비스 I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당행</u>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<u>수수료 면제</u></li> <li>2. <u>당행</u>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<u>수수료 면제</u></li> <li>3. 인터넷뱅킹, 폰뱅킹(ARS)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<u>수수료 면제</u></li> <li>4.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<u>자동이체 수수료 면제</u></li> <li>5. 통장 <u>재발행 수수료 면제</u></li> </ol>	<p>문구 변경</p>
<p><u>(신설)</u></p>	<p><u>(수수료 우대서비스 II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창구 타행이체 <u>수수료 면제</u></li> <li>2.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<u>수수료 면제</u></li> </ol> <p>(타행은 ~ 제공되지 않습니다.)</p>	<p>문구 변경 개정전 제5조 제2항에서 이동</p>
<p><u>② 은행은 제1항의 필수요건의 월별 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해당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시 월5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, 아래 추가요건 중 1건을 충족 시 5회를 추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u></p>	<p><u>② 은행은 제1항의 필수요건 충족 고객이 아래의 추가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,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될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,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만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.</u></p>	<p>문구 변경</p>
<p>(추가요건) 1.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월</p>	<p>(추가요건) 1.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</p>	

<p><u>3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</u></p> <p><u>2. 아파트 관리비를 이 예금에서 이체 시</u></p> <p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</p> <p>1.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</p> <p>2.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(타행은 ~ 제공되지 않습니다.)</p> <p><b>제 7 조 (신설)</b></p>	<p><u>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</u></p> <p><u>2.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</u></p> <p>(삭제)</p> <p><b>제 7 조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</b></p> <p>① <u>제6조의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 대상이 아닌 고객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,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될 다음달에 제6조 제1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총합 월10회 제공하며<sup>(주2)</sup>, 하나멤버스 회원이면서 추가로 아래 특별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될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총합 월 20회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를 총합 월5회 제공합니다.<sup>(주3)</sup></u></p> <p><u>(주2) 전월 말부터 거래시점 현재까지 하나멤버스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 제공</u></p> <p><u>(주3) '16.12.26 이전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, '17.1월 중 특별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'17.2월부터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</u></p> <p>(특별요건)</p> <p>1. <u>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결제 시</u></p> <p>2. <u>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</u></p> <p>3. <u>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</u></p> <p>4. <u>이 예금에서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시</u></p> <p>5. <u>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</u></p>	<p>문구 변경</p> <p>제6조 제1항으로 이동</p> <p>조 신설</p>
--	--	--